

집합투자기구 변경등록신청서

문서번호 : MU250306_1

2025. 03. 06.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펀드심사1팀) 자산운용감독국

사본수신 :

제 목 : 집합투자기구 변경등록 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머스트 원앤온리 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
2. 변경등록 신청일 : 2025년 3월 6일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주)머스트자산운용

붙 임 : 집합투자기구 변경 내용 1부. 끝.

김 두 용 대표이사 (인)



작 성 자 : 박상은 (팀장)

전화번호 : 02-578-5080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펀드 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머스트 원앤온리 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K553M3ED505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 모자형,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 :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인당 투자금액 제한 등 가입 제한 사항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모집 개시 이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모자형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 특별히 모집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ust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사의 영업일에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종류)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머스트 원앤온리 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K553M3ED505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24년 7월 24일	최초설정
2024년 7월 26일	환매 청구 기준일 변경(매주 수요일 → 매월 7일, 14일, 21일, 말일) 환매 주기 단축(D+15 기준가격으로 D+29 지급 → D+12 기준가격으로 D+16 지급)
2025년 3월 13일	환매수수료 삭제 환매 기준가격 및 대금지급 산정 기준 변경(매월 7일, 14일, 21일, 말일 → 매일) S클래스 / S-P클래스 정의 변경(협회 규정 개정사항 반영) 판매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머스트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도곡동, 린스퀘어) 대표번호 : 02-578-5080, 홈페이지 : www.mustinvestment.com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지시) 업무 등의 위탁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연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AUM)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두용	1979	대표이사	17	5,515억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년 4개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머스트자산운용 대표이사 (2015.09.04~현재)								
정기홍	1985	운용팀장	17	5,515억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년 4개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머스트자산운용 운용팀장 (2015.09.04~현재)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집합투자기구 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합산한 수입입니다.

주4) "운용규모"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합산한 규모입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역이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작성일 기준)

성명	운용현황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AUM)
김두용	12	5,196억원
정기홍	12	5,196억원

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최근 3년)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사모투자재간접형

나. 종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머스트 원앤온리 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입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머스트 원앤온리 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80% 이상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등	50% 초과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집합 투자기구 포함)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에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투자 집합기구는 제외합니다.
②	채권 및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2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이나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 234 조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이라 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③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	2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4. 상기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④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2)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제한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투자매매업자(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투자중개업자(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⑥	동일종목 투자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 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 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④~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7제5항각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며,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며, 주요 운용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펀더멘탈 롱(Fundamental Long): 국내/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재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자산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내재가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가치투자),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기업(기업가치 재평가 기업 투자), 시장 변동성에 방어적 성향의 기업(실적주), 신규 상장하는 기업(IPO 청약) 등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는(Equity Long) 단순한 구조의 전략
- ② 이벤트 트리븐(Event-Driven): IPO, M&A, 블록딜,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 시장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투자기회들을 활용하여, 주식 롱 오픈 전략을 보완하며 안정적인 수익 및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 ③ 채권 보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채, 통안채, 특수채, 회사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권 보유에 따른 수익(Carry 수익)을 취하는 전략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REPO, 채권형 ETF에 투자하는 전략

이 투자신탁의 초기 투자대상은 당사가 운용하는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이나,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당사가 신규로 설정하는 새로운 전략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하거나, 타사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주식을 50% 이상 편입하는 증권형 또는 혼합자산형 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하며, 편입한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계약이 변경되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투자요건 등을 준수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 정기 또는 수시로 이 투자신탁 및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 투자전략 점검 및 투자대상자산 등에 대해 당사

의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일별 기준가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편입비율, 변동성 등 위험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시로 유동성 및 위험수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매월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시장 급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시 위험관리위원회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일반 개요>

구 분	내 용						
투자신탁 유형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개방형, 추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 4, 6, 8, 9, 10호 :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최초 설정일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호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호	머스트 일반 사 모 투자신탁 제 10호(미국Focus)
	16.10.07	16.10.07	17.01.20.	19.06.14.	21.11.10.	23.08.17.	23.12.22.
계약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 없음						
회계기간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 3, 4, 6호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호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호	머스트 일반사 모 투자신탁제 10호(미국Focus)
	매년 12월 31일				매년 11월 9일	매년 8월 16일	매년 12월 21일
투자신탁 보수 등 (종류형인 경우 C-F 클래스 기준)	- 선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투자신탁보수(순자산 기준, 연간) : 0.977% (8호, 9호, 10호의 경우 1.022%)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0.9%				
	판매회사 보수율		0.02%				
	신탁업자 보수율		0.035% (8호, 9호, 10호의 경우 0.08%)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0.022%				
집합투자업자	(주)머스트자산운용						
신탁업자	미래에셋증권 (재위탁사 :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 회사	우리펀드서비스						

<투자 전략>

(기준일 : 2024.6.30.)

펀드명	주요 특징	운용규모 (단위:억원)	편입비중 (%)	운용회사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안정추구형·국내외혼합형] Fundamental Long/Short - 주요전략 : 국내외에 성장산업 및 기업에 대한 Fundamental Long/Short, Value/Growth Bias등의 전략을 시장상황과 기회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사,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전략,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투자전략	1,033	17.10%	머스트 자산운용
머스트 일반	[적극투자형·국내외혼합형] Equity Long/Short & Leverage	953	17.08%	머스트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주요전략 : 담보대출, 신용공여, Equity Swap 등을 순자산의 100분의 200까 지 운용 가능한 레버리지 전략, 개별종목 분석을 통해 주시가격 하락에 투자하 는 차입공매도 전략 등 위험 헷지 high Risk & return 성향 펀드, 성장성이 높 은 벤처기업 등 비시장성 자산에 제한적인 비중 내에서 능동적으로 투자			자산운용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안정형·국내외혼합형] Equity Long-only - 주요전략 : 자체적인 Bottom up 리서치 프로세스를 통해 다량의 자료를 활용 한 철저한 기업분석 및 산업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외 상장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 차입공매도 및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며,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서 소 극적인 투자전략	792	17.12%	머스트 자산운용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투자형·국내외혼합형] Equity Long-only & Leverage - 주요전략 : 국내외 성장산업 및 기업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Equity Long-only전략, 시장상황 및 경제 환경 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자산의 100 분의 150 이내의 제한적인 레버리 지를 활용하여 투자 하는 전략, 비시장성 자산에 적정규모 이내 투자 가능	400	11.42%	머스트 자산운용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호	[안정형·상장주식투자형·국내외혼합형] Equity Long-only - 주요전략 : 국내 및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로서 집합투자재산의 100% 이하까지 투자하는 전략, 레버리지 사용 불가, 차입공매도 전략 사용 불가, 비시장성 자산 편입 불가	213	12.40%	머스트 자산운용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호	[안정형·상장주식투자형·국내형] Equity Long-only - 주요전략 :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내재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된 기 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 이하까지 투자하는 전략, 레버리지 사용 불가, 차입 공매도 전략 사용 불가, 비시장성 자산 편입 불가	248	12.25%	머스트 자산운용
머스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호 (미국 Focus)	[적극투자형·상장주식투자형·국외형] Equity Long/Short & Leverage - 주요전략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내재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된 기 업에 투자하며, 순자산의 10%까지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한 레버리지 전략, 개 별종목 분석을 통해 주시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차입공매도 전략 등 위험 헷지 high Risk & return 성향 펀드	63	7.25%	머스트 자산운용

주1) 상기 예상 편입비중은 현재시점에 예상되는 전체 편입 금액 대비 각 피투자펀드 편입 금액 비율로, 향후 시장상황 및 유동성 등에 따라 피투자펀드 및 편입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운용전략에 따른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 시장상황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신규로 설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타사가 운용하는 국내외 집합 투자증권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에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 자기구 및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비시장성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기 구, 법 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서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자산의 100분의20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재간접 투 자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메자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TRS)에 20% 초과 투자 등 고난도 금융상 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4) 타사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시 상장주식을 50% 이상 편입하는 증권형 또는 혼합자산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에 투자대상 자산이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규약이 변경되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각 피투자펀드의 최대 편입한도는 20%이며,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편입자산과 비중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한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투자요건 등을 준수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MCMS(머스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시스템과 점검 매뉴얼을 통해 일일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연간점검 등 항목별 위험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종목별 보유한도 준수여부 점검
- 종목별 Loss Cut 사전 점검
- 종가개입 등 불공정거래 항목 점검
- 주의/관리종목 승인거래 점검
- 비시장성 자산 편입비중 점검
- 펀드별 유동성 점검
- 펀드별 해외자산 편입비중 점검 등

또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주의)	• 리스크관리부서 및 운용부서 상호 점검 및 통보 • 운용부서는 시장급변에 따른 위탁자산 영향을 점검 - 위기상황으로 판단시에는 2단계 절차를 진행
2단계(경계)	• 관련 운용부서는 지체없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위기 점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함 - 발생현황, 원인분석, 향후전망, 관련부서 협조사항
3단계(위기)	•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한 전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함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위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통화에 대한 외환거래의 유동성이 증가 또는 거래 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거래위험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 운용역은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가치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해외증권의 경우 해당 해외 시장의 지정학적 위험 및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주식, 채권 등에 재간접 투자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어질 경우 해당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가치는 해당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 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하위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습니다.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타집합투자기구 대비 비중이 확대 혹은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 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 투자등의 운용 제한 요건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또는 섹터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의 적용이 완화되거나 배제되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격과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이 산정되지 않고 매주 1 회 또는 매월 1 회 산정될 수 있는 등 기준가격 산정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안정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안정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보수 이외에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되는 성과보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 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환매주기 관련 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 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간접투자에 따른 추가비용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에 명시된 보수 이 외에 재간접투자에 따른 하위 신탁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 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 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제도 변경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 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범위 및 과세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시 기존 비과세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 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 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 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납세의무자 관련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제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직접 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으며,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자투자신탁만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머스트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이 투자 신탁의 위험등급을 6등급 중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자투자신탁에서 이 모투자신탁을 투자할 경우 해당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등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수익률 변동성으로 위험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을 투자할 경우 해당 자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이 모투자신탁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자투자신탁의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등급 분류는 (주)머스트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대상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 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국내·외 부동산, 상품(Commodity), 리츠,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주2)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주3)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주5)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업자 영업시간 중 집합투자업자에게 자투자신탁이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B.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주) 기준시점은 이 투자신탁의 자펀드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펀드가 매입 청구된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집합투자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선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업자 영업시간 중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13영업일(T+12)에 고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7영업일(T+16)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B.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14영업일(T+13)에 고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8영업일(T+17)에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주1)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2) 기준시점은 이 투자신탁의 자펀드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펀드가 매입 청구된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각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 시 이전 집합투자업자의 영업가능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집합투자업자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이 투자신탁의 자펀드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 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18영업일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1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7 조의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이 투자신탁의 자펀드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법 제 237 조와 시행령 제 258 조의 절차에 따라 환매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 밖에 ①부터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이 투자신탁의 자펀드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투자신탁의 자펀드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9)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원미

	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또한, 누적기준가격이란 이익분배금 전액이 재투자되지 않고 누적된 기준가격(세전 기준)입니다. 즉,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세전 기준)을 포함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www.mustinvestment.com) 인터넷홈페이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	------

①상장주식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②비상장주식· 비등락지분증권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③채무증권 등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등의 평가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평가
④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의 가격이 없는 경우 전날까지 최근일의 가격)
⑤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전날에 공고(또는 제공)된 기준가격)로 평가
⑦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 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①~⑦외의 자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 내용
구 성	운용팀장/리서치총괄팀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팀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업 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투자신탁 해지시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보수 및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 투자신탁 관련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

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수 및 지급 내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기준 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주기	지급시기	지급 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최초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서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 원천과세대상 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C-P, C-Pe, S-P 가입자에 한함]

구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 1,800만원 한도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으로 분리과세 1.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3.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050원	1,050원
손익	(+)50원	(+)50원
세금		(+)50원*세율(15.4%)=7.7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50원	950원
손익	(-)50원	(-)50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0'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50원	1,050원
손익	(-)50원	(+)50원
세금		(+)50원*세율(15.4%)=7.7원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050원	950원
손익	(+)50원	(-)50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0'원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개별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범위 및 과세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기존 비과세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조세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 (2024.07.24 ~ 2025.01.2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제1기(2024.07.24 ~ 2025.01.23)
운용자산	14,657
증권	13,918
파생상품	-
부동산/실물자산	-
현금 및 예치금	65
기타 운용자산	674
기타자산	0
자산총계	14,657
운용부채	-
기타부채	-
부채총계	-
원본	12,891
수익조정금	792
이익잉여금	973
자본총계	14,657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1기(2024.07.24 ~ 2025.01.24)
운용수익	968
이자수익	2
배당수익	94
매매/평가차익(손)	872
기타수익	19
운용비용	0

관련회사 보수	-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14
당기순이익	973
매매회전율 ^{주1)}	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발생내역 없음)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발생내역 없음)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	-	-
부동산	-	-	-
장내파생상품	-	-	-
장외파생상품	-	-	-
합계	-	-	-

(주 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	32

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항목	제1기(2024.07.24 ~ 2025.01.23)
운용자산	14,657
현금및예치금	65
현금및현금성자산	65
예치금	-
증거금	-
대출채권	200
콜론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00
매입어음	-
대출금	-
유가증권	13,718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수익증권	13,718
기타유가증권	0
파생상품	-
파생상품	-
부동산과 실물자산	-
건물	-
토지	-
농산물	-
축산물	-
기타운용자산	-
임차권	-
전세권	-
기타자산	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674
정산미수금	-
미수이자	0
미수배당금	-
기타미수입금	0
기타자산	-
수익증권청약금	674
자산총계	14,657
운용부채	-

파생상품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기타운용부채	-
기타부채	0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정산미지급금	-
해지미지급금	-
수수료미지급금	0
미지급이익분배금	-
기타미지급금	-
부채총계	0
원 본	12,891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792
이월잉여금	973
자본총계	14,657

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항목	제1기(2024.07.24 ~ 2025.01.23)
운용수익	968
투자수익	115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94
수수료수익	5
기타투자수익	14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872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872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외환거래/평가차익	-
기타차익	-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외환거래/평가차손	-
기타차손	-
운용비용	14
운용수수료	-
판매수수료	-
수탁수수료	-
사무수탁수수료	-
지급수수료	0
기타비용	14
당기순이익	97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백만좌, 백만원)

수익증권	기간초 잔고		2024.07.24 ~ 2025.01.31 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머스트원앤온리증권모 투자신탁(사모투자재 간접형)	-	-	13,950	14,859	709	780	13,241	14,94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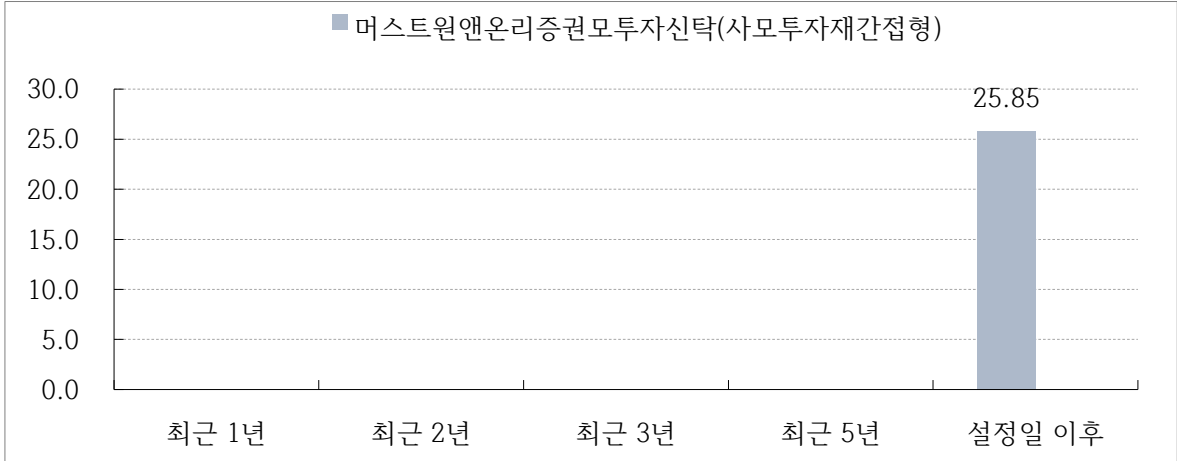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수익증권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2.01~ 2025.01.31	2023.02.01~ 2025.01.31	2022.02.01~ 2025.01.31	2020.02.01~ 2025.01.31	2024.07.24~ 2025.01.31
머스트원앤온리증권모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 접형)	2024.07.24	-	-	-	-	25.85
수익률변동성	-	-	-	-	-	12.35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만, 설정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익기간 수익률에 대해 연환산하게 되므로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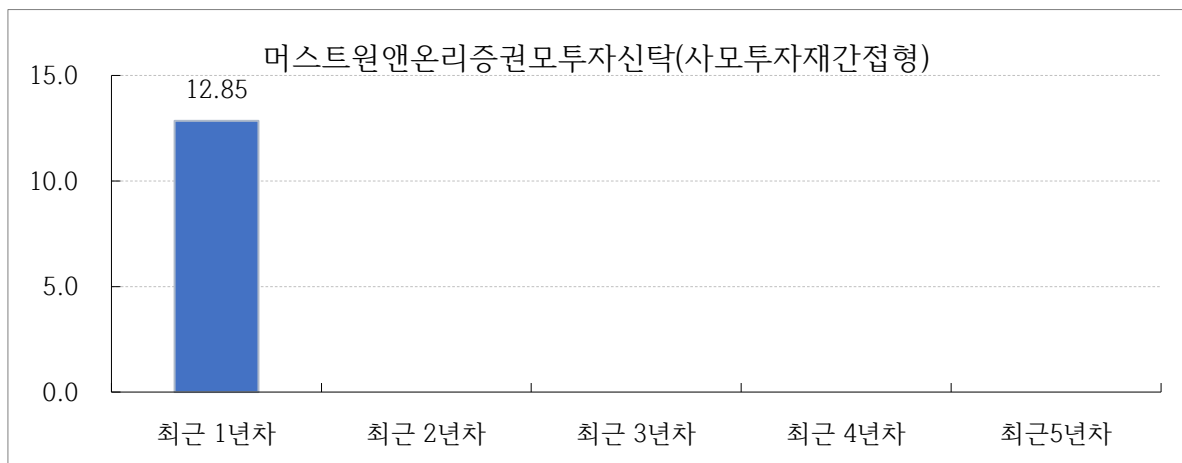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4.02.01~ 2025.01.31	2023.02.01~ 2024.01.31	2022.02.01~ 2023.01.31	2021.02.01~ 2022.01.31	2020.02.01~ 2021.01.31
머스트원앤온리증권모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 접형)	2024.07.24	12.85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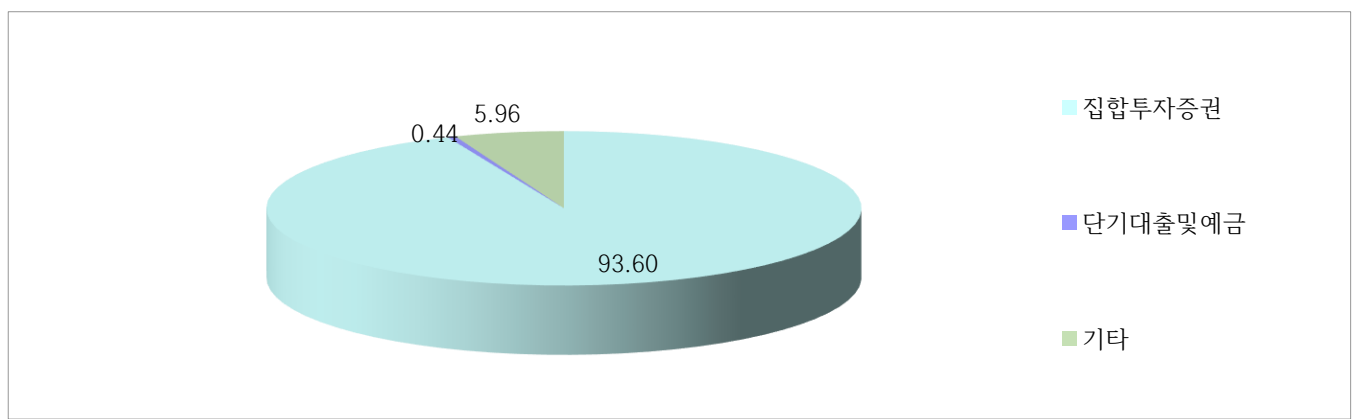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수익률인 “기간수익률”을 말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수익률”을 말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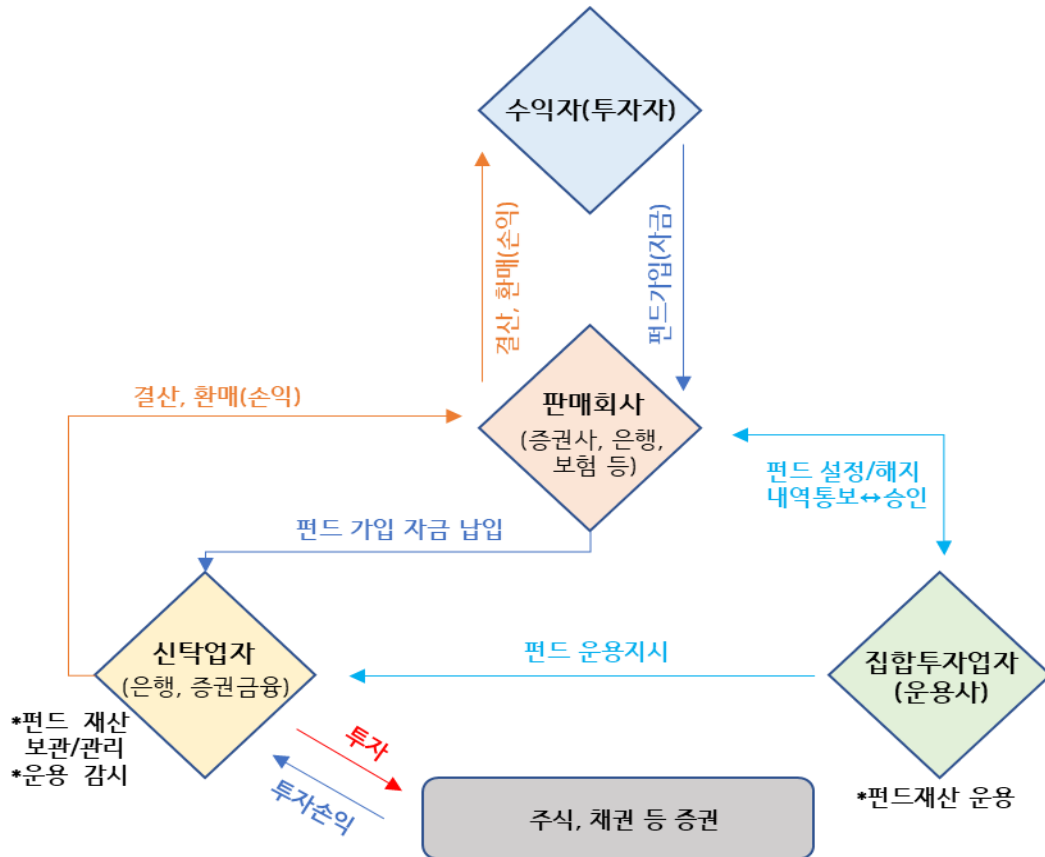
(1) 머스트원앤온리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025.01.23 기준,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합계	-	-	-	137.2	-	-	-	-	-	0.6	8.7	146.6
	-	-	-	93.60%	-	-	-	-	-	0.44%	5.96%	100.0%
KRW	-	-	-	137.2	-	-	-	-	-	0.6	8.7	146.6
	-	-	-	93.60%	-	-	-	-	-	0.44%	5.96%	100.0%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수익자(투자자가) 수익증권(펀드)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펀드)의 취득을 위한 금전 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증권(펀드)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승인)하고 신탁업자(펀드 재산 보관/관리)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펀드)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수익자(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로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도곡동, 린스퀘어) 02-578-5080 www.mustinvestment.com
주요 연혁	◇ 2006년 4월 머스트인베스트먼트 설립 ◇ 2009년 4월 투자일임업 등록 및 머스트투자자문으로 상호 변경 ◇ 2010년 3월 투자자문업 등록 ◇ 2013년 2월 운용자산 1,000억 달성 및 일임고객 신규가입 중단 ◇ 2015년 9월 물적분할(금융위 인가) -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사업부문을 100% 자회사로 분할 신설 설립. 사명 머스트투자자문

	- 기존회사는 지주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존속. 사명 머스트홀딩스 ◇ 2016년 9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및 머스트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 일임고객 머스트 사모펀드상품으로 이전 (일임 당시 재계약률 94.25%) ◇ 2017년 1월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 ◇ 2022년 10월 증권펀드집합투자업(3-11-1)인가 취득
자본금	10억원
주요주주 현황	(주)머스트홀딩스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FY 2023 2023.12.31	FY 2022 2022.12.31
현금 등	3,238,753,550	408,605,353
유가증권	26,523,663,132	20,824,565,700
유·무형자산	1,513,574,081	512,549,655
기타자산	3,158,359,950	947,028,736
자산총계	34,434,350,713	22,692,749,444
차입부채	9,700,000,000	1,500,000,000
기타부채	1,686,213,715	1,951,651,734
부채총계	11,386,213,715	3,451,651,734
자본금	1,000,000,000	1,000,000,000

계정과목	FY 2023 2023.12.31	FY 2022 2022.12.31
자본잉여금	3,119,964,570	3,119,964,57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1,843,408	(72,608,377)
이익잉여금	18,656,329,020	15,193,741,517
자본총계	23,048,136,998	19,241,097,710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계정과목	FY 2023 2023.1~2023.12	FY 2022 2022.1~2022.12
영업수익	2,376,728,811	3,561,211,261
영업비용	4,430,858,596	6,340,134,457
영업이익	(2,054,129,785)	(2,778,923,196)
영업외수익	5,797,469,436	35,909,039
영업외비용	213,086,431	26,634,497,735
법인세차감전이익	3,530,253,220	(29,377,511,892)
당기순이익	3,602,080,366	(30,304,320,085)

라. 운용자산 규모(2024.06.28. 기준, 단위 : 억원, 금융투자협회 공시_설정원본 기준)

종류	증권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합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재간접						
수탁고	13	-	-	-	134	-	-	-	-	5,913	6,05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미래에셋증권(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1588-6800
홈페이지 참조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2) 주요업무

-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 일치여부 확인
-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4층(여의도, Parc1 Tower1), 02-769-7855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fp.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키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4층, 02-3215-1400
홈페이지 참조	http://www.bond.co.kr

회사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홈페이지 참조	http://www.nicepni.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 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 요청한 수익자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등을 보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신탁계약서 제37조에 따른 보수율로 6개월간 계산한 금액(단, 남

은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2)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등)

- 상기사항과 별도로 수익자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시행령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

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명세서/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입니다.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방법에 따

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www.mustinvestment.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및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기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낮은 중개회사 ◇ 중개회사 담당부서(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지원능력 ◇ 리서치, 탐방, 포럼, 세미나 지원 ◇ 매매체결능력 및 관련 시스템 보유여부 등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의 담당자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분기 1회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자펀드인 “머스트 원앤온리 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고유재산을 투자합니다.

- 투자주체 : 머스트자산운용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으로 책임운용 강화
-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최초 2억 원을 투자하며, 책임운용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최소 3 년 이상
- 투자금 회수계획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

금의 50% 이내로 함. 투자기간이 종료되고 회수를 결정할 경우 회수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연 해지사유
- ② 소규모펀드로서 임의해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이 되는 경우
- ④ 다른 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투자 의무를 승계

주2)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펀드 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립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종목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만기일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수정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분배 등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누적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정된 기준 가격을 말한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운용보수와 별도로 산정되는 성과보수(별도성과보수) 나. 운용보수의 형태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성과운용보수)
기본운용보수율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운용보수의 지급 비율을 말한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펀드는 그 비교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투자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내용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 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 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평가액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 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 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